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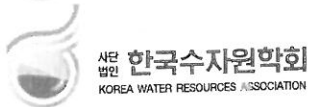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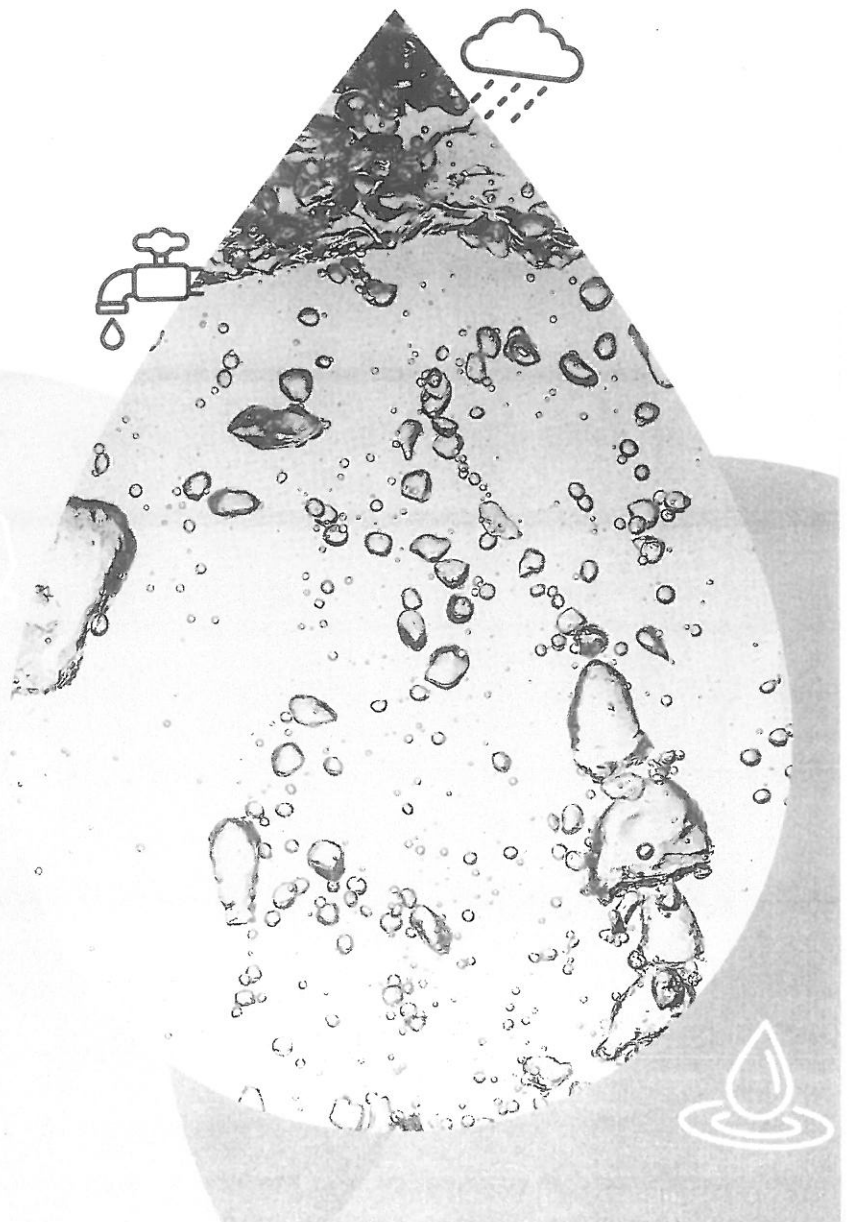
물관련 3개 학회 공동 대토론회

“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논하다”

- 일시 : 2018년 7월 25일(수) 14:00~17:40
- 장소 : 양재 aT센터 3층 세계로움-II,III
- 주최 :  **KSWW(사)대한상하수도학회**
Korean Society of Water & Wastewater



- 주관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프로그램

물관련 3개 학회 공동 대토론회 “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논하다”

- 일시_ 2018년 7월 25일(수) 14:00~17:40
- 장소_ 양재 aT센터 3층 세계로룸-II,III
- 주최_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수자원학회
- 주관_ 환경부
- 프로그램

사회자: 최영균 교수 충남대학교

구 분	시 간	내 용
등록	13:00~14:00	
개회식	14:00~14:04	개회사_ 배재호 회장(대한상하수도학회)
	14:04~14:07	환영사_ 허준행 회장(한국수자원학회)
	14:07~14:12	축 사_ 주승용 국회부의장(국회의원)
	14:12~14:17	축 사_ 김은경 장관(환경부)
	14:17~14:20	주승용의원 공로패 전달_ 염익태 회장(한국물환경학회)
	14:20~14:30	기념촬영
1 세션	14:30~14:45	발 제_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정책방향”
	14:45~15:45	패널토론_ 사회자: 장석환 교수(대진대학교) -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환경부) - 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환경부) - 현인환 교수(단국대학교) - 김경민 박사(국회입법조사처) - 김성준 교수(건국대학교) - 염형철 공동대표(물개혁신포럼)
휴식	15:45~16:05	커피 브레이크
2 세션	16:05~16:20	발 제_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환경부)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16:20~17:20	패널토론_ 사회자: 윤주환 교수(고려대학교) -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환경부) - 정희규 수자원정책과장(환경부) - 이호식 교수(한국교통대학교) - 김만재 물산업플랫폼센터장(K-water) - 최인종 회장(물산업클러스트추진협의회) - 오윤근 부사장((주)유신)
종합토론	17:20~17:35	청중 및 기타 의견
폐회	17:35~17:40	폐회

Session

I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정책방향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이후 추진방향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Ministry of Environment

물관리 일원화 이후 추진방향

 환경부

CONTENT

I	추진배경	03p
II	추진경과	04p
III	물관리 3법 주요내용	05p
IV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현황	11p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일원화 추진('17.5.22)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 물관리부서로 개편”

- > 지난 20년 간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이 지속제기
 - 김영삼정부(환경부 일원화 검토), 김대중정부(통합관리 원칙 천명), 노무현정부(환경부 일원화 추진), 이명박정부(일원화 검토), 국회「물기본법」제정 추진(15대~20대, 총 17건) 등
- > 전문가의 77.4%, 국민의 65.3% 일원화 찬성(정책학회, '17년)
- > 일원화시 30년간 약 12조원 예산절감 효과(정책학회, '17년)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 국회처리('18.5.28)

정부조직법 발의
(우원식의원 등, '17.5월)

일원화협의체 운영
(9~11월)

여야협의
(11~'18.5월)

조직개편시 유보
(7월)

정부조직법 발의
(주승용의원 등, 11월)

국회통과
(5.28)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로의 기반 마련

III 물관련 3법 주요내용

III 물관련 3법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주승용의원 등 142인)

- › 국토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기능
환경부 이관 (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토부 존치)



물관리기본법 (주승용의원 등 33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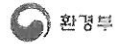
- ›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물기술산업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 › 물산업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 ›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 실증화 시설 및 기업집적단지 조성·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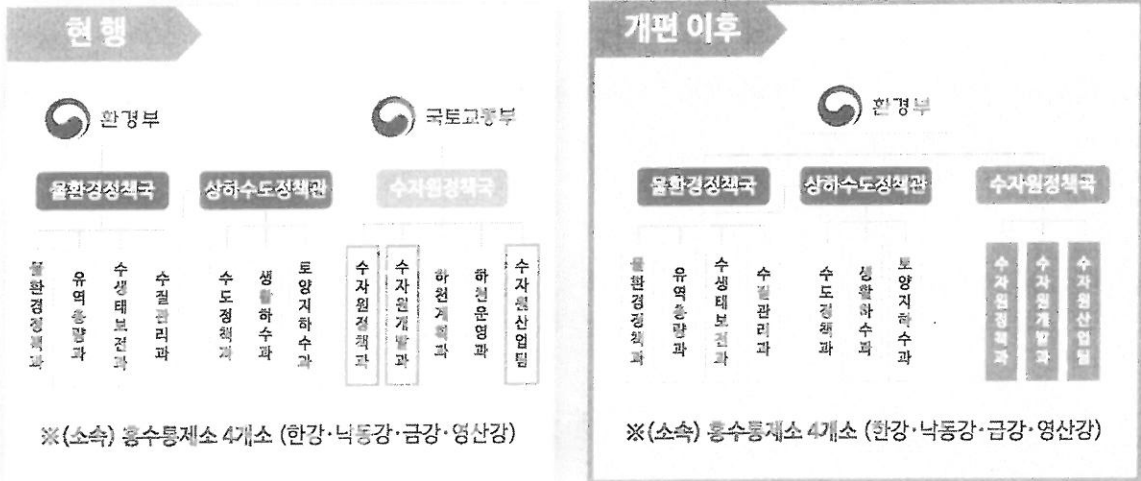
III 물관련3법 주요내용



1. 정부조직법

조직이관

- > 수자원 국 및 국내 3개 과(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산업팀) 36명
- > 4대강 별 홍수통제소(12과 1센터) 152명
- * 환경부 +1국 +3과 +4개소, +188명(고위나2, 3.4급1, 4급 6, 4.5급이하 179)



III 물관련3법 주요내용



1. 정부조직법

기능이관

구분	국토부 존치	환경부 이관
정부조직법	하천에 관한 사무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개별 법률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관리계획 수립, 하천공사 -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 하천점용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정책·개발, 수문조사 - 댐관리, 홍·갈수 예보·통제, 친수구역 조성 - 지하수, 광역상수도, 수자원산업, 수공 감독

법령이관

수자원·수량 관련 5개 법률(수자원법 등)은 환경부로 이관,
하천관리 2개 법률(하천법, 하천토지보상법)은 국토부 존치

환경부로 이관법령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환경부 이관	국토부 존치
소관 법률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 -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수자원법 - 댐건설법 - 한국수자원공사법 - 지하수법 - 친수구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자원법 댐건설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 - 하천편입토지보상법

2. 물관리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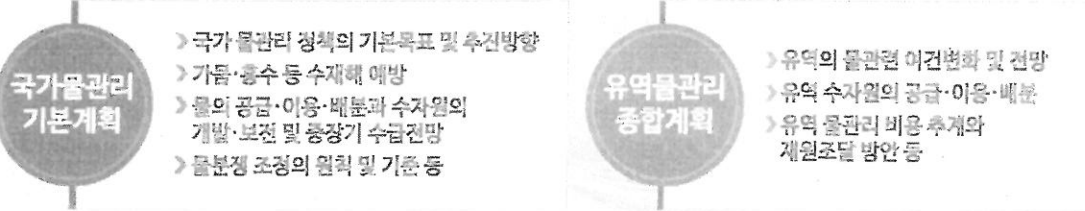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국가·유역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 조정, 국가계획 이행여부 평가 등 물관련 최상위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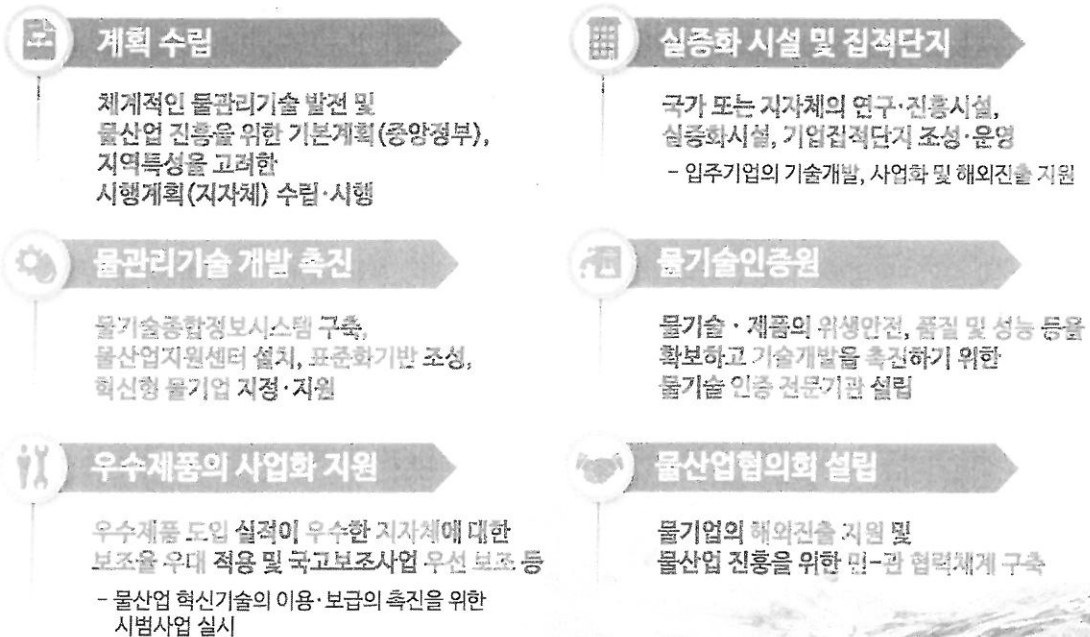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소속	대통령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 2인 (국무총리 및 민간 1인)	공동위원장 2인 (환경부장관 및 민간 1인)
주요기능	국가·유역 계획 심의·의결, 유역간 물분쟁 조정 등, 사무국 설치	유역 계획 심의·의결, 유역 내 물분쟁 조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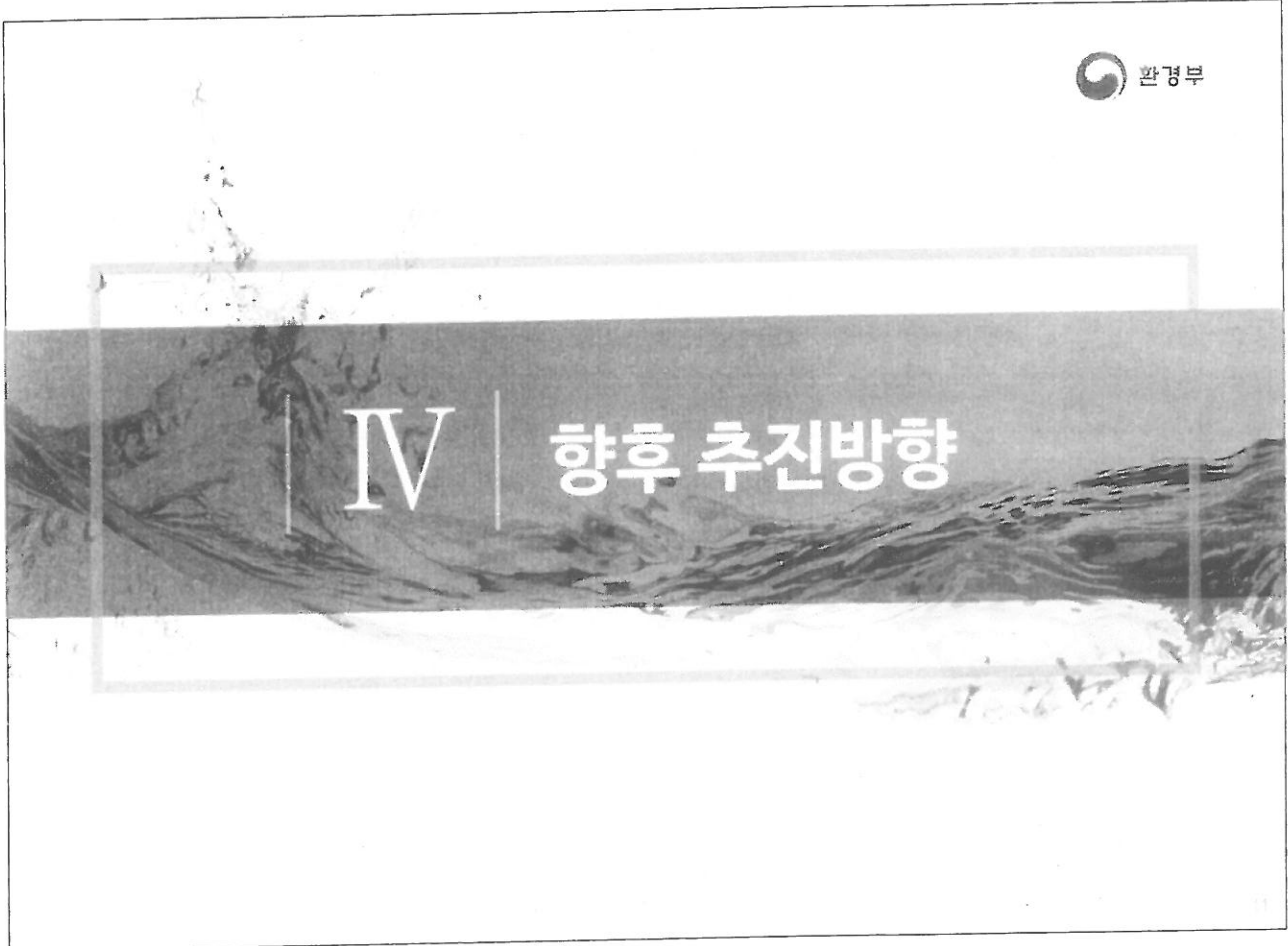
국가·유역물관리기본계획 등

국가, 유역단위 통합물관리를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활용



3. 물기술산업법





IV | 향후 추진방향

IV 향후 추진방향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2018-09-08 문학일보

조직개편 후 홍수대비 급선무

물관리일원화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서 국토교통부 인력 5000여 명과 3년 5조 들어오는 8 일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

2018-09-08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 통합물관리 본격화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수자원·대안·물관정책

2018-09-08 경향신문

물은 환경부, 강은 국토부... 결국 반쪽 출발

반쪽 논란이 일었던 물관리일원화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4년간 재자연화의 핵심인 하천 관리 기능은 국토교통부에 남아있어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공시발주 영향은?

물 건설, 유지·관리 조성을 시·군·구·도, 모두 환경부로 이관. 위수준과 산성사업, 부하 재고량도 시·군·구·도, 5공구 등 행정 국토부, 위수준의 관할... 시설유지·관리 사업은 계속 협의



“국민들의 통합물관리에 대한 기대와 눈높이를 맞추고,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전환하겠음”

1단계
일원화의 안착

물관리 일원화 체계의 안정화,
여름철 홍수대비 관리체계정비

2단계
통합물관리 고도화

유역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재정체계 통합,
물관리기본법 후속조치
등 통합물관리 고도화

1. 안정적 이관

통합물관리 준비기획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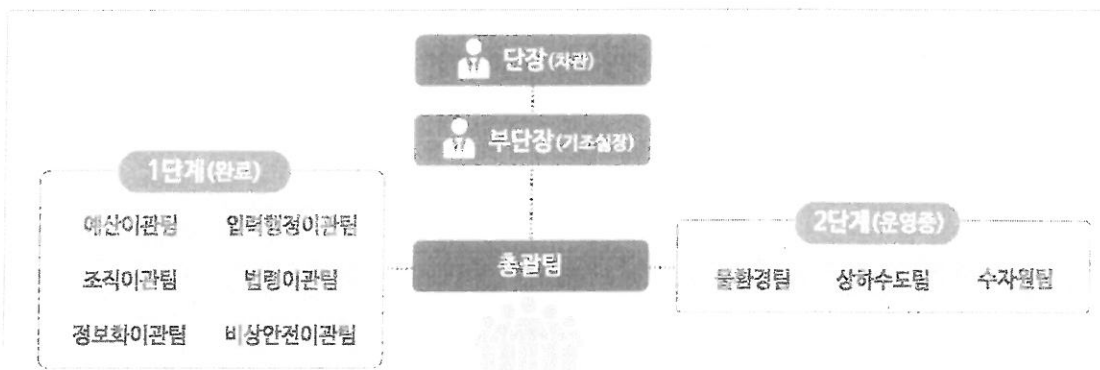
기능 : 물관리일원화 및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방향 제시 등

1단계

이관작업 마무리, 홍수대응에
차질없도록 우선 조치 추진
※ 조직 내 직원 화합 등 개편 체계 수용성 제고 병행

2단계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관련 기초자료 수집,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통합물관리 추진 로드맵 마련



2. 여름홍수대비

여름철 호우 및 태풍전망



강수량

평년('81~'10) 강수량(평균 723.2mm)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증가 예상

평년수준 6월 130.3~185.0mm, 7월 240.4~295.9mm, 8월 220.1~322.5mm



태풍

여름철(7~8월) 평균수온 증가로 발생 가능성 증가

* 최근 10년간('08~'17년) 한반도 영향 28개 태풍발생, 7~8월 19개로 집중 발생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빈도 증가, 예년대비 높은 댐 수위(127%) 등 홍수기 여건 감안, 선제적·체계적 홍수관리 필요

2. 여름홍수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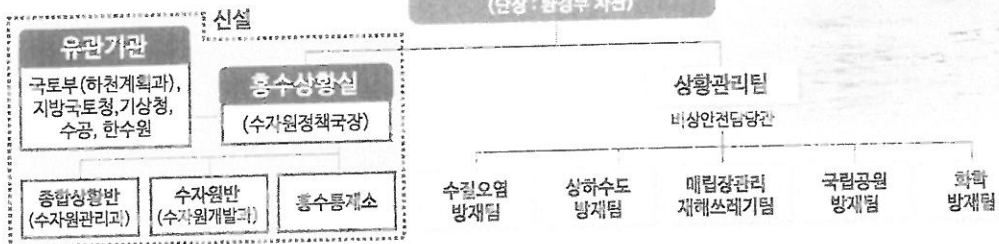
기준 정비

보고·대응체계 변경 및 책임 명확화,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홍수해대응 매뉴얼 개정

홍수상황실 운영

환경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단」(총·차관) 내 홍수상황실(총·수자원정책국장)을 신설하여 기상·홍수상황 관리 및 보고

상황관리 체계(안)



취약지역 관리

보 개방에 따른 분류·지류 합류부, 수해복구 공사현장, 접경지역 등 홍수취약지역 안전관리 차질없이 진행

* 국가하천 전 구간 대상 홍수기전 안전점검(315건), 하천분야 국가안전대진단(63건) 결과 보수·보강 등

| 비전 |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 핵심가치 |

안전성 · 형평성 · 효율성 · 민주성 · 책임성

| 핵심전략 |



핵심전략 ① **유역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수량-수질 관리 분절 ▶ 유역단위 물관리 체계 통합



물의 적정배분, 물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거버넌스, 법·제도, 재정 등 분야별 통합 물관리 체계 정비안 마련 ('18.12월 로드맵, '19. 下 세부실행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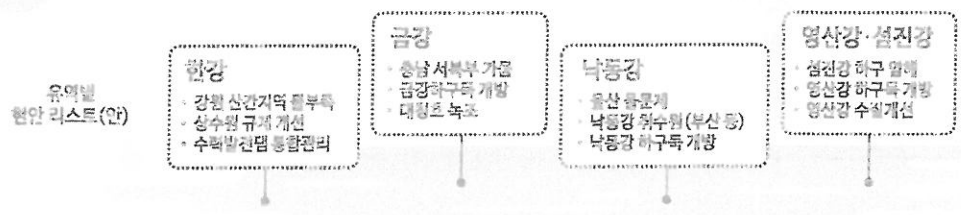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 부처협의 · 입법예고 등('18.12~'19.4)
- 차관 · 국무회의('19.5)

지역 물문제·갈등 지속 ▶ 참여·협력에 기반한 유역 물문제 해결



유역별 핵심현안 리스트 마련('18.6월), 기관간 협업체계 운영, 지역 거버넌스 등 수량-수질 복합적인 유역 물문제 해결 추진



핵심전략 ① 유역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광역-지방상수도 이원화 → 통합물관리로 중복투자 해소



지자체 단위로 분절된
용수 공급 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하여 유역 수자원·활용
*광역상수원, 하수재이용 등

유역단위
통합 공급체계
(예시)



단위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업용수와
인근 댐용수로 공급, 하수처리수 방류

단위 유역별로 댐용수는 생활용수로 공급,
하수처리수는 공업용수로 재이용



유역단위 장기 물수요 도출 후
최적의 수자원 조합을 미리 구축하고
지속가능順으로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 설정

맞춤 활용 및 누수 저감

하수처리수 재이용

대형하수원 개발



지하수 개발과 보전 행정 일원화로 지하수 개발, 이용, 패공 및 수질관리 등
'전주기 통합관리체계' 구축하여 수질보전 강화 및 이용성 확대

* 지하수이용 미신고시설(50만공 추정), 방치폐공(1만여공)이 지하수 수질 오염초래

핵심전략 ② 가뭄·홍수 재해 예방



가뭄취약지역 물부족 → 효율적 용수배분, 가뭄 해소



기존댐을 재평가하여 용수공급능력을 분석하고, 댐 용수 재분배(생·공, 농업, 하천유지) 등
제한된 수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



가뭄지역 인근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15년 0.5억톤 → '20년 1.1억톤)하여
공업용수로 소모되던 댐용수 등을 신규 생활용수로 확보



도시·산간지역 등 상습 가뭄지역에 지하수댐, 누수저감사업 등
지역맞춤형 수자원 개발 및 공급*으로 가뭄 해소

*지방취수원 고갈지역(원도노화·보길도, 신안 안좌·팔금도 등)에 추가 식수원 개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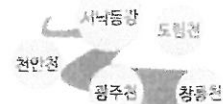
기후변화 등으로 도심홍수 빈발 → 도시침수 대응능력 강화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 수립
(환경부 하수도, 국토부 하천, 행안부 내수침수 등, ~'20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홍수에 취약한 도시하천 30개소 기 선정('17.8월)



안전적 사업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화 추진



핵심전략 ② 가뭄·홍수 재해 예방

기상·강우 연계관리 부족 가뭄·홍수 예측 및 대응 체계 확립



강우레이더 전국망 구축(총 6기, '18년 3개소 신설)

종합관제센터 설치

기상청 협업강화로 산간·접경지역까지 정확도 높은 예측정보 제공

☞ 선행 홍수예측(3시간 → 6시간) 기술 개발로 홍수예측 강화



기관·분야별(기상청·수공·농공)로 생산·제공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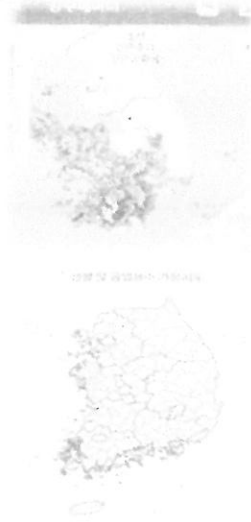
가뭄 감시 및 전망정보 공유, 지역별 가뭄대응지원을 위해

통합가뭄정보센터(수공) 운영



권역별 도시·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가뭄 취약지도를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사전대응 대책 수립에 활용



핵심전략 ③ 4대강 자연성 회복

4대강사업 부작용 지속 → 객관적 평가 거쳐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18. 下)하여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수량상태 등 평가 후보 처리방안 마련('18.12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4대강 수계별 특성에 맞는 자연성 회복방안 논의 및 결정·추진('19. 下)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저하 → 하구 수생태계 회복



하굿둑 자연성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역주민 등) 협의체 구성 등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 덕동강 하굿둑 운영개선·생태복원 방안 마련 연구(1차('18.1~10), 2차('18. 下~))

☞ 영산강 하구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조사·연구('17.8~'18.12) 등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 추진

개발 중심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



신규 친수구역 지정 : 신중 검토, 현재 진행 중 사업* : 생태·경관 보존 등 친환경적 추진

*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 (총 4개소)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 국토부와 협조하여 미래 혁신성장 성공 사례로 발전



핵심전략 ④ 물산업·기술 진흥

물산업 육성 분산 → 물산업클러스터를 허브로 육성, 집중화



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허브로 구축('19.7월 가동)하고, 분산된 지원 정책·시설(댐, 정수장 등) 등을 통합적으로 조정·운영 (기대효과) 물산업 수출액 1.65조원→10조원, 일자리 12.4만명→20만명('15년→'30년)



'국가물산업 R&D 중장기 로드맵('18.12월)'을 수립하여 수량·수질·수생태가 연계된 통합관리 기술개발 도출 ICT를 활용한 스마트 제어기술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 집중

물산업 해외 진출 기능 중복 → 물산업 해외진출 효율화



KWP(한국물산업협회), KWF(한국물포럼) 등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유사 협의체의 기능 조정·운영 대·중소기업 교류·협력사업 발굴, ODA 사업 연계를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물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

Session

II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환경부)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2018. 7.



1

차 례

- I 글로벌 물시장 동향 및 국내 여건
- II 물산업 육성전략
- III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2

I. 글로벌 물시장 동향 및 국내 여건

세계 물시장

- ✓ 글로벌 물시장 지속 성장 및 투자 확대
 '17년 \$7,252억 규모(연평균 4% 성장 전망)
 '11~'30년 \$18조 투자
 (cf. 통신 \$8.2조, 교통 \$5.4조, 전기 \$4.2조)
- ✓ 각국은 글로벌 물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적 역량 집중



국내 물시장

- ✓ 가격경쟁 위주의 저수익 구조 교착화
 발주처 : 하자가 낙찰제 선호, 우수 기술제공 적극 외면
 물기업 : 기술혁신 통한 상실
- ✓ 상하수도 원비에 따른 물시장 수요 정체
 상수도 보급률 99%, 하수도 보급률 93%

물기업 해외진출

- ✓ 핵심 부문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미흡
 최고기술국 대비 50~75% 수준
- ✓ 기술혁신을 통한 해외진출보다 내수시장에 안주
 물기업 96% 해외진출 계획 불

▶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시급

II. 물산업 육성전략('16.11)

비전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

목표



물 복지 증진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물 공급·이용체계 구축

물기업 매출액 ('15년) 31.4조원 → ('30년) 50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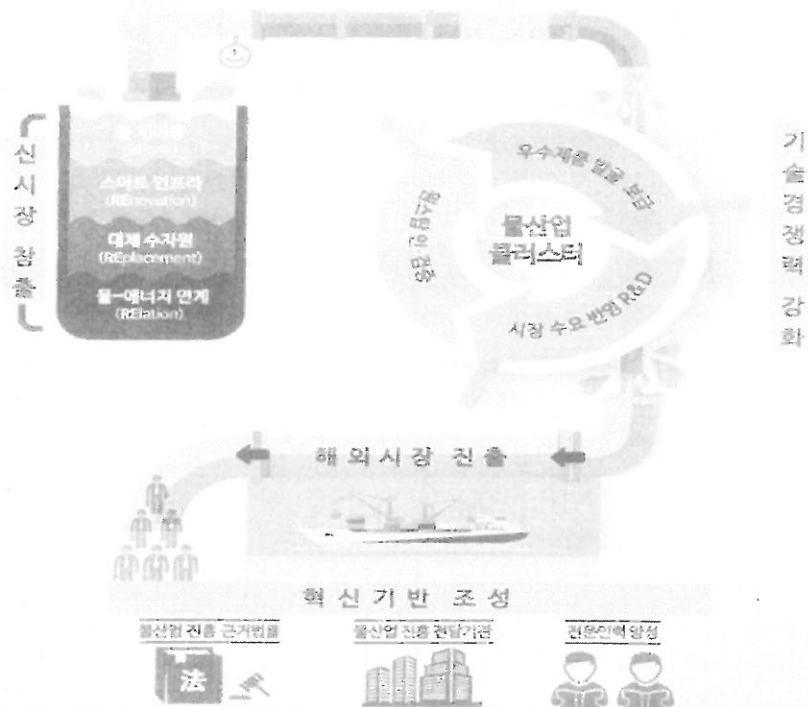
수출액 비중 ('15년) 4.1% → ('30년) 20%

물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Bridge Program)

新시장 창출
 (REWater Project)

물산업 혁신 기반 조성
 (Innovation Base)

II. 물산업 육성전략('16.11)



III.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추진배경 및 현황

- ◆ 물산업 육성전략의 실행력 확보와 물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 법률 마련
- ◆ 광상도 의원('16.7), 윤재옥 의원('18.1) 발의*, 본회의 통과('18.5), 시행('18.12)
 - * 통합물관리포럼('17.10~11)에서 광상도 위원인의 주요 쟁점 해소
 - ① 지역특혜(형평성), ② 수도권영화(공공성), ③ 통합물관리, ④ 지자체 역량 강화, ⑤ 중소기업 지원
- ◆ 하위법령 제정 추진 중 * 입법예고('18.7~8), 규제법제심사('18.9~10), 차관국무회의('18.11), 시행('18.12)

법안 주요내용 (3장 24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제5장 및 부칙
목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해외진출 지원	업무위탁
정의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융합정보시스템 구축	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물산업협의회 설립	시행일
	물관리기술개발 추진	분산형 실증화시설 조성		
	우수제품등 사업화 지원 및 시범사업 실시	물기술인증원 설립		
	혁신형 물기업 및 창업 지원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Ⅲ.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1. 물산업의 범위

법 제2조

- ◆ 수도시설 관련 기술사업
- ◆ 하수도 설치·관리 사업
- ◆ 물의 재이용 관련 사업
- ◆ 농어촌용수 개발·이용 관련 사업
- ◆ 하천공사
- ◆ 댐 건설·이용·관리 관련 사업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상기 사업과 관련 설계, 건설, 운영,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사업

시행령안 제2조

- ◆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해양심층수관련업
- ◆ 신재생에너지 중 물이 에너지원인 사업
- ◆ 하천 유지·보수 및 하천수 관리 관련 사업
- ◆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사업
- ◆ 수문조사 관련 기술사업 및 수자원관리기술 관련 사업
- ◆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활동
-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Ⅲ.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2. 기본계획·시행계획

법 제5조

- ◆ (정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기본방향과 목표, 국내외 환경 분석
-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 ◆ (시·도지사) 시행계획 수립

시행령안 제3조 및 제4조

-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요청 가능
-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활용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

Ⅲ.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3. 물산업 실태조사

법 제6조

- ◆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산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 ◆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물산업공공기관, 관련 기업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 가능

시행령안 제5조

- ◆ 실태조사의 내용
 - 국내외 시장 현황, 수출 및 매출 실적
 -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 연구개발 현황
 - 전문인력 양성과육 현황
 - 검인증 현황
 - 지적재산권 획득보유 현황
- ◆ (시기) 매년 1회(필요시 추가 실시)
- ◆ (조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사전 통보

Ⅲ.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4.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법 제7조

- ◆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기술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 촉진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법인 등에 요청 가능
-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

시행규칙안 제2조

- ◆ (수행업무) 정보시스템 구축관리를 위해 정보 수집·분석 및 홍보·교육, 국내외 협력, 정보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등
- ◆ (활용)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에 물산업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정보 제공

Ⅲ.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5.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법 제10조

- ◆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이나 기술을 우수제품등으로 지정
- ◆ 우수제품등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보조율 우대, 국고보조 우선 지원 가능
- ◆ 국가,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성·운영
- ◆ 우수제품 구매 관할 물산업 시설에 사용

시행령 안 제8~10조

- ◆ (검증·평가) 우수제품등 검증·평가기준(우수성·안전성·공급안정성, 세부판단 기준은 고시)에 따라 성능이 확인된 제품·기술을 선정
- ◆ (물산업기술심사단)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 우수제품등의 지자체 도입실적 평가 등 수행
- ◆ (유효기간) 3년(3년 이내 연장 가능)
- ◆ (우수지자체 지원) 대상은 도입률의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지원보조율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20% 가산
- ◆ (협력체계) 우수제품등 우선구매, 혁신형 물기업 지원 등 협의

Ⅲ.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6. 시범사업의 실시

법 제11조

- ◆ 정부는 물산업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 시행

시행령 안 제11조

- ◆ (대상기술) 물순환이용, 빗물재이용, 에너지자립, ICT 융복합 등 혁신기술
- ◆ (추진절차) 계획수립·공고 → 지자체 등 신청 → 선정 → 성과평가
- ◆ (성과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범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

Ⅲ.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7. 창업 지원

법 제12조

- ◆ 정부는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지원 가능

시행령안 제12조

- ◆ (지원사항) 창업·경영 컨설팅, 물산업 관련 기술이전, 물산업 시장정보 제공, 마케팅 및 제품판로 개척 등 지원
- ◆ (지원방법)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성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

Ⅲ.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8. 혁신형 물기업 지정 등

법 제13~14조

- ◆ 환경부장관은 지정 요건 중 둘 이상을 갖춘 중소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 가능
- ◆ 국가는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 제품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 지원 가능
- ◆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해 정기적인 성과평가 실시

시행령안 제15~16조

- ◆ (지정요건) 연구개발 투자 비율($\geq 3\%$), 수출 비율($\geq 5\%$), 해외인증 보유(별도 고시)
- ◆ (유효기간) 5년
- ◆ (지정절차) 물기업 신청 → 의견청취 → 심사·통보 → 지정서 발급
- ◆ (성과평가) 정기평가(연1회), 종합평가(종료시)
 - 정기평가 시행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 지원 축소 및 중단 가능

Ⅲ.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9.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법 제15~16조

- ◆ 국가·지자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가능
- ◆ 국가·지자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운영을 위탁 가능
- ◆ 국가·지자체는 사용료 징수 가능
- ◆ 국가·지자체는 입주기업 지원 가능
 - 시설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우선 참여
 - 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자금 융자 등 우선 제공

시행령 안 제17~19조

- ◆ (입지선정)
 -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등을 대상
 - 인력기업유치, 기존산단 활용 등을 고려
 -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 ◆ (업무위탁)
 - 위탁받는 기관과 내용을 고시
 - 성과평가(5년주기, 필요시 단축) 결과에 따라 기관 변경 등 조치 가능
- ◆ (사용료) 위탁받는 기관이 중앙행정 기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결정
- ◆ (입주기업지원) 산·학·연 합동연구, 사업화지원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Ⅲ.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10.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법 제17조

- ◆ 국가,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와 연계하여 관한 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 조성·운영 가능

시행규칙 안 제5조

- ◆ (사전협의) 분산형 시설을 조성·운영 시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
- ◆ (사용료)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사용료 규정 준용

Ⅲ.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11.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법 제19조

- ◆ (목적) 물관리기술 또는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 확보를 위한 인·검증 및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 ◆ 업무
 - 물관리기술 또는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검증
 - 인·검증을 위한 기준 개발 및 조사·연구
 - 기준 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 기법 개발

17

Ⅲ.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12.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20조

- ◆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가능
 -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18

Ⅲ.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13. 해외진출 지원, 물산업협의회 설립

법 제21조

- ◆ 국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 가능
-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 규격화 지원

법 제22조

- ◆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해 물산업협의회 설립
-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증진
-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 해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
- 그 밖에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업

[참고]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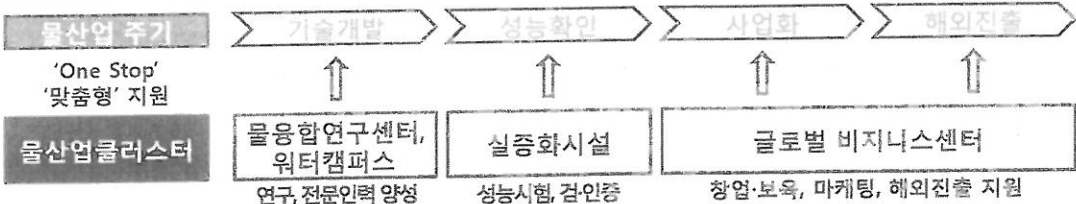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물기업 주기별 원스톱·맞춤형 지원을 통해 물산업 혁신 첨단기지 구축
- ◆ (총사업비) 2,373억원(국비)
- ◆ (사업기간) '16.11 ~ '19.6
- ◆ (위치면적)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 14만5천 m²

주요 시설 및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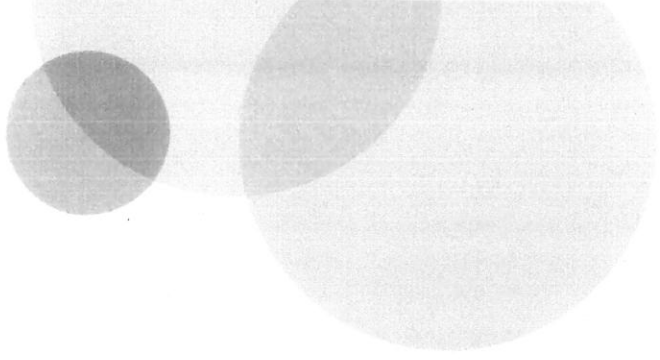


역할





감사합니다



물관련 3개 학회 공동 대토론회

“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논하다”

일시 : 2018년 7월 25일(수) 14:00~17:40

장소 : 양재 aT센터 3층 세계로움-II,III

주최 :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수자원학회

주관 : 환경부

